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방화벽 (MF2-3200 1대, BLUEMAX NGF-2000 1대, BLUEMAX NGF-1500 1대, BLUEMAX NGF-500 4대, BLUEMAX NGF-300 2대)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시큐아이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3,905,00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 월 21 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시큐아이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방화벽 (MF2-3200 1대, BLUEMAX NGF-2000 1대, BLUEMAX NGF-1500 1대, BLUEMAX NGF-500 4대, BLUEMAX NGF-300 2대)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시큐아이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3,905,00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 월 21 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시큐아이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사회안전망 연계 서비스 패키지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사단법인 스마트도시협회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5,950,00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 월 21 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사단법인 스마트도시협회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사회안전망 연계 서비스 패키지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사단법인 스마트도시협회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5,950,00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 월 21 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사단법인 스마트도시협회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제 품 명 : 통합관제용 VMS 관리 및 저장서버, 통합플랫폼 서버(GIS, 통합DB, 영상 스트리밍, S-서비스, 운영서버 등)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다누시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109,200,00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 월 21 일

발주기관명 군포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다누시스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제 품 명 : 통합관제용 VMS 관리 및 저장서버, 통합플랫폼 서버(GIS, 통합DB, 영상 스트리밍, S-서비스, 운영서버 등)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다누시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109,200,00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 월 21 일

발주기관명 군포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다누시스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웹방화벽 (Wapples-2400 1식)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펜타시큐리티(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2,346,00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 월 21 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펜타시큐리티(주)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웹방화벽 (Wapples-2400 1식)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펜타시큐리티(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2,346,00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 월 21 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펜타시큐리티(주)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서버 15대 및 소프트웨어)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인텔리빅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50,879,000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 월 21 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인텔리빅스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서버 15대 및 소프트웨어)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인텔리빅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50,879,000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 월 21 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인텔리빅스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백업어플라이언스 (QN5000)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에임아이티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2,057,000**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 월 21 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 ㈜에임아이티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백업어플라이언스 (QN5000)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에임아이티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2,057,000**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 월 21 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 ㈜에임아이티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백본스위치 등(CISCO C6807-XL)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아이티오티넷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0,287,000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7 월 21 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 ㈜아이티오티넷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백본스위치 등(CISCO C6807-XL)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아이티오티넷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0,287,000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 월 21 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 ㈜아이티오티넷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시스템접근제어(NGS), 망연계솔루션(i-OneNet 5식)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휴네시온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6,567,00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 월 21 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휴네시온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시스템접근제어(NGS), 망연계솔루션(i-OneNet 5식)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휴네시온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6,567,00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 월 21 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휴네시온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IP관리시스템(Smart NAC) 1식(센서(PEA 70C, PEA 40A) 포함)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넷맨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 등)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2,988,000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7년 9 월 21 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 넷 맨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IP관리시스템(Smart NAC) 1식(센서(PEA 70C, PEA 40A) 포함)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넷맨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 등)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2,988,000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7년 9 월 21 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 넷 맨 (인)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제 품 명 : 통합플랫폼 DBMS
○ 발 주 기 관 : 군포시청
○ 제조사 . 공급사 : ㈜티맥스티베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6,710,000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21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 . 공급사명 ㈜티맥스티베로 (인)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제 품 명 : 통합플랫폼 DBMS
○ 발 주 기 관 : 군포시청
○ 제조사 . 공급사 : ㈜티맥스티베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6,710,000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 월 2 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 . 공급사명 ㈜티맥스티베로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 APPM for CCTV(H/W 2대 포함)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크로니아이티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 등)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3,110,40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09월 21 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크로니아이티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 APPM for CCTV(H/W 2대 포함)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크로니아이티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 등)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3,110,40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09월 21 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크로니아이티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IoT 스마트함체 관리시스템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엔시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 등)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2,500,000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21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주식회사 엔시드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IoT 스마트함체 관리시스템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엔시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 등)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2,500,000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21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주식회사 엔시드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영상표출시스템 DLP Cube (Contra LFH 70) 16식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하이브시스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 등)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4,773,00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21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하이브시스템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영상표출시스템 DLP Cube (Contra LFH 70) 16식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하이브시스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 등)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4,773,00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 월 21 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하이브시스템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차량번호인식용 카메라 (SW800-TLPR 등) 46대, 주행차량 CCTV 통합제어기 3대(S/W 포함), 통합 및 이미지 서버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새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 등)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4,970,43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09월 08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새움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차량번호인식용 카메라 (SW800-TLPR 등) 46대, 주행차량 CCTV 통합제어기 3대(S/W 포함), 통합 및 이미지 서버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새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 등)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4,970,43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09월 08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새움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대상시스템 : 차량번호인식용 카메라(REX-3301 등) 13대, 통합 및 이미지서버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렉스젠㈜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5,193,53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09월 08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렉 스 젠 ㈜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대상시스템 : 차량번호인식용 카메라(REX-3301 등) 13대, 통합 및 이미지서버
○ 발주기관 : 군포시청
○ 제조사·공급사 : 렉스젠㈜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생활안전용 CCTV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5,193,53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09월 08일

발주기관명 군 포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렉 스 젠 ㈜ (인)